

2021년 연말정산 안내

◆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PDF파일 업로드 후 나이스출력물, 주민등록등본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2. 1. 25.(화)까지 행정실로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2. 1. 15. 오픈예정**(전화상담 126) :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필요(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 없어도 조회 가능)

◆ **가급적 교직원 PDF업로드는 2022. 1. 20일부터 하길 권장합니다.**
[권장기간: 1. 20.(목) ~ 1. 24.(월)]

◆ 연말정산 자료 나이스 입력 방법 및 제출자료◆

<http://neis.sen.go.kr> 접속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 자료등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PDF파일 다운 후 업로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지급명세서 ·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날인),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출력물, **국세청 PDF 출력물(양면 출력)**,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행정실로 제출

※ 이종공제 및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 유의사항◆

- **중도임용자(3월,9월등)는 임용일 이후 자료만 공제대상임**(국세청 자료 조회시 귀속년월을 임용월 이후부터 설정하여 조회한 후 다운받으면 됨, 단 기부금과 개인연금저축은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 전액 공제 대상)
- 이종 근로소득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3월,9월 중도임용자 해당)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국세청 전수조사 실시(**여위작성 주의**)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불가**(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화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시 추정당할수 있음)

※ 방학 중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도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정산 가능

※ 이종공제 및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에서 연말정산 수정가능.

※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아야 함.

◆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국세청 고객센터: ☎126, <http://call.nts.go.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주민등록등본발급 등)

1 2021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제출서류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1961.12.31.이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2001. 1. 1.이후 출생)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공제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급여 41,600,000원 이하)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급여에서 일 괄 공제 납부 하 므로 별도의 신 청은 필요 없음	나이자료 활용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청약종합 저축 등 불입액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 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 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 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 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2.1%)이상으로 차입 한 금액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서사본 현영영수증, 계좌이 체영수증, 무통장입 금증 등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제출서류												
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p> <table border="1"> <tr> <td>차입시기</td> <td>취득당시기준시가</td> <td>주택규모</td> </tr> <tr> <td>2012.12.31이전차입</td> <td>3억원</td> <td>국민주택규모</td> </tr> <tr> <td>2014.1.1.이후 차입</td> <td>4억원</td> <td>제한없음</td> </tr> <tr> <td>2019.1.1.이후 차입</td> <td>5억원</td> <td>제한없음</td> </tr> </table> <p><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 이후 차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500만원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1.12.31 이전 차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차입시기	취득당시기준시가	주택규모	2012.12.31이전차입	3억원	국민주택규모	2014.1.1.이후 차입	4억원	제한없음	2019.1.1.이후 차입	5억원	제한없음	<p>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 사본</p>
	차입시기	취득당시기준시가	주택규모													
2012.12.31이전차입	3억원	국민주택규모														
2014.1.1.이후 차입	4억원	제한없음														
2019.1.1.이후 차입	5억원	제한없음														
	③주택마 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한도	<p>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p>* 주택마련저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p>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12/31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중 1</p>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국세청 자료 활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또는30%) 3월공제율(30%~80%) 4월~7월공제율(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3월 30%, 4~7월 80%) - 40% 공제대상(3월~7월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30% 공제대상(3월 60%, 4월~7월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tr> <td>총급여액</td> <td>공제한도</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td> </tr> <tr> <td>7천만원~1.2억원</td> <td>28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적용금액에 포함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국세청 자료 활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2015. 12. 31. 까지 가입한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증명서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제출서류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0.5%]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1인 : 연 15만원 2인 : 연 30만원 3인 이상 : 연 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연금저축	납입액 × 12% (연 700만원 한도, 50세이상은 900만원) 연금저축은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 (50세이상은 6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연금납입확인서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험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및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를 적용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제외 -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 공제(해당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추가(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진단받아본인부담산정특례대상자로등록한 자): 의료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 ㉡,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국세청자료활용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세액감면·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p>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p> <p>* 공제한도</p> <p>·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 한도</p> <p>·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p> <p>·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p>	<p>나이제한을 받지 않음</p> <p>(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p>	<p>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등</p> <p>(특별활동바다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p>	교육비납입증명서
					<p>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중·고생 30만원 이내)</p>	
					<p>교육비, 국외교육비</p> <p>(국외유학요건 폐지)</p>	
				<p>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등</p>		
				<p>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p> <p>*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p>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p>기부금의 100/110</p>	<p>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p> <p>-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p>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10만원 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p>·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p> <p>·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0%</p>	<p>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p>	<p>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p>	
			<p>* 공제대상한도</p> <p>·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p> <p>·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p>			
			<p>·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p> <p>·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p>			
지정기부금(종교단체)	<p>·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p> <p>·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p>	<p>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p>	<p>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소속증명서</p>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p>이자상환액의 30%</p>	<p>'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p>	<p>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p>		
월세 세액공제		<p>· 총급여5.5천만원 이하: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p> <p>· 총급여5.5천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p>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p> <p>*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p> <p>*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p>	<p>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p>		

2 개인별 공제자료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후 신청/제출 및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발급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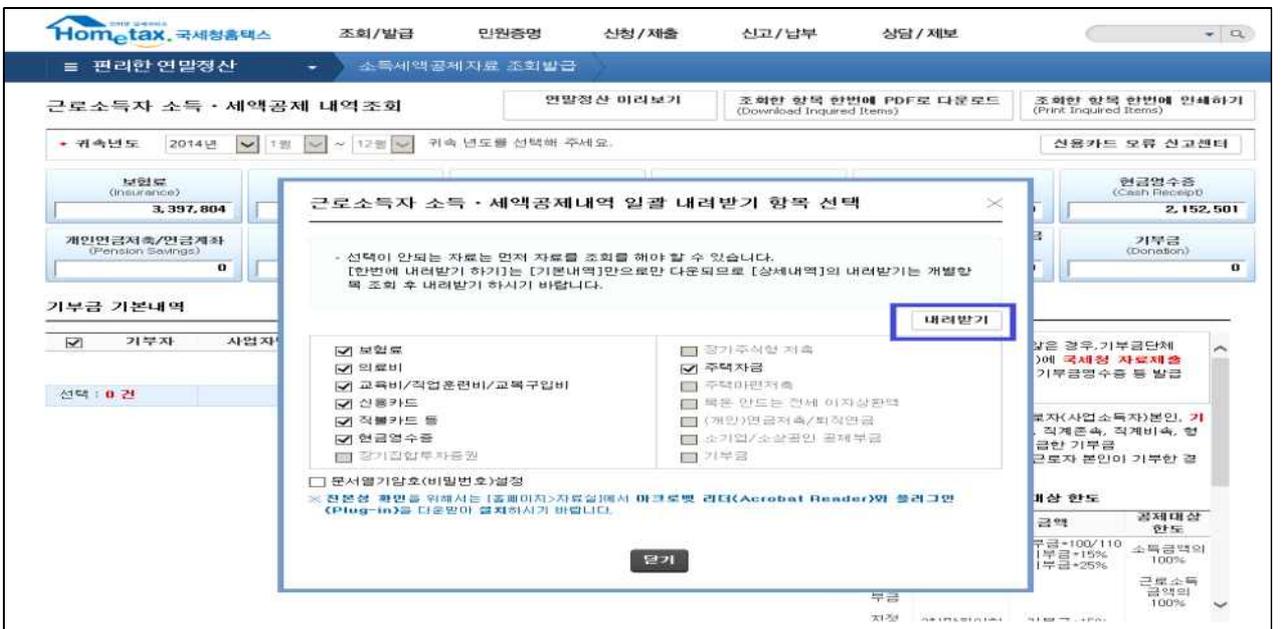


조회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증명자료 항목별로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클릭 (조회 시 기본공제가 아닌 대상자는 체크 해제 후 다운로드)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내려 받기 클릭 후 저장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서명 후 행정실 제출): 해당자만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 상신함
- 미결/협조함
- 공람함
- 예결함
- 기결함
- 메시지함

나의 메뉴

- 복무
- 급여
- 연말정산
 - 근로소득확인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즐거찾기

나의업무

대치중학교(교무/학사,회)

나의업무

2016년10월26일 15시32분 (1,05)

FAQ | 집의등록 | 도움말 | 연결처서 | 이동영상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키속년도 2015년 조회 출력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의료증빙코드	지급건수	지급금액	주민등록번호	본인동해당여부	남임시술비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110-03-84889	스타약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114-96-05495	대할병원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126-29-83944	태양약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126-90-48520	하남서울정형외과의원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126-96-05732	햇살병원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132-18-12657	선한약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214-13-34467	국홍일피부과의원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X	N
<input type="checkbox"/>	214-14-75484	서초힐치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214-14-75484	서초힐치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X	N
<input type="checkbox"/>	214-31-02732	알파약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X	N
<input type="checkbox"/>	214-96-00238	박영서미비인후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X	N
<input type="checkbox"/>	220-08-87892	상쾌한미비인후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366-05-00244	태평양 약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O	N
<input type="checkbox"/>	366-05-00244	태평양 약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1			X	N
합계				14				

페이지 1/3 PM 3:40

기부금명세서 출력(서명 후 행정실 제출): 해당자만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 상신함
- 미결/협조함
- 공람함
- 예결함
- 기결함
- 메시지함

나의 메뉴

- 복무
- 급여
- 연말정산
 - 근로소득확인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즐거찾기

나의업무

대치중학교(교무/학사,회)

나의업무

2016년10월26일 15시33분 (1,05)

FAQ | 집의등록 | 도움말 | 연결처서 | 이동영상

● 기부금명세서등록

키속년도 2015년 조회 출력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주인)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108-82-64060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교단체외 지정	1		본인		
<input type="checkbox"/>	116-83-00138	국가보훈처	법정기부금(10)	1		본인		
합계				2	184,000			

※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합계액은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페이지 1/3 PM 3:40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출력(서명 후 행정실 제출): 해당자만

2016년 10월 20일 13시 35분 (1,05)

연금저축공제등록

귀속년도: 2015년

조회 출력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추가,저장,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 자동입력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산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월세명세서 출력(서명 후 행정실 제출) : 해당자만

2016년 10월 26일 15시 34분 (1,05)

월세명세서등록

귀속년도: 2015년

조회 출력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소득공제

입력 여부	임대인 성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주택 양	주택계약 면 적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대인 계약기 시작일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